

제 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채점기준(제66조관련 별표24)

시 험 항 목	감 점 기 준	감 점 방 법
(1) 굴절코스 전진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2) 곡선코스 전진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3) 좁은길코스 통과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4)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

※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(1)과 (2)의 시험항목만을 실시한다.